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12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박홍배

문대림 • 임호선 • 이원택

문금주 • 주철현 • 송옥주

이병진 · 임미애 · 서삼석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 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연재해 빈도 증가에 따라 보상률을 하향하거나 농어민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 할증률을 상향하는 등 재해 피해 책임을 농어업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발생하거나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 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 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마.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 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후단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시행"을 "수립·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1.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내용으로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 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홍보 및"을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u>수립·시행</u>) ① 농림축산식	의 <u>수립·변경</u>) ①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	
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	
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수립된 기본계</u>
	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	3 <u>품목, 대상</u>
<u>상 지역</u> 에 관한 사항	지역 및 상품 개발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
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u>⑦</u>
<u>변경·시행에</u>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
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농어업재해 현황, 농어업재
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u>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 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2. (생략)
- 3. 손해평가의 <u>방법</u>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 기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 2. 재해보험 목적물의 <u>선정</u>에관한 사항
 - 3. 4. (생략)
 - ② ~ ⑥ (생 략)
 -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u>농업재해보험</u>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u>농업인</u>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u>들</u>을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u>방법(농업재해에</u>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
<u>다)</u>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1. 제2조의4 각 호의 사항
2 <u>선정 및</u>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
<u> 적물의 확대</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
<u>보험</u>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

⑧ (생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② ------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 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⑤ ------

체-----들어야 한다.

- (8) (현행과 같음)
-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 음)

 - --매년 <u>확대하기</u>-----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 과 같음)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 해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1.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손해평가인이</u> 공정하고 객 관적인 <u>손해평가를 수행할 수</u> 있도록 연 1회 이상 <u>정기교육</u>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u><신 설></u>

⑦ (생략)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전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 <u>손해평가인의</u>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u>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u>
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
<u>으로 정기교육</u>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
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
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الم المحالية الم
<u>이 경우 보험가입</u>
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
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② · ③ (생 략)

-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저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 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 5.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 제 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 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 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
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	구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	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	의
관리) ①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육성 및</u>	재
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
문성 제고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7조(시범사업) ①	
개발	하
거나 도입하려는	

②・③ (현행과 같음)

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u>교육・홍보</u>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 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u>교육·홍보를</u>
<u>하여야 하고,</u>	